

관리번호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① 신고인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전화번호				
②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율구분	코드	합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소계	
④ 양도소득금액								
⑤ 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양도소득기본공제								
⑦ 과세표준 (④ + ⑤ - ⑥)								
⑧ 세출								
⑨ 산출세액								
⑩ 감면세액								
⑪ 외국납부세액공제								
⑫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⑬ 원천징수세액공제								
⑭ 수정신고가산세 등								
⑮ 기신고·결정·경정세액								
(16) 자진납부할세액 (⑨-⑩-⑪-⑫-⑬+⑭-⑮)								
(17) 분납(물납)할세액								
(18) 자진납부세액								
(19) 환급세액								
농어촌특별세 자진납부계산서		주민세 자진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후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0) 소득세 감면세액	(29) 소득세 자진 납부할 세액							
(21) 세출	(30) 세출							
(22) 산출세액	(31) 산출세액							
(23) 수정신고가산세등	(32) 자진납부세액							
(24) 기신고·결정·경정세액	(33) 환급세액							
(25) 자진납부할 세액	환급금 계좌신고							
(26) 분납할 세액	(34) 금융기관명							
(27) 자진납부세액	(35) 계좌번호							
(28) 환급세액								
				세무서장 귀하				
첨 부 서 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접수일자인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기타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1.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1부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작성 방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2. ②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등
3. ③세율구분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③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동일한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함)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4. ⑥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5. ⑨산출세액란·⑩감면세액란·⑪외국납부세액공제란 및 ⑫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 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8. ⑭수정신고가산세 등란: 수정신고가산세·기장불성실가산세 및 기한후신고가산세 등을 합계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⑮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10. 자진납부할세액란부터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1. 환급금 계좌신고(·)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2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물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별지 제86호서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 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2년 이상 보유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단, 1세대3주택은 아래 바. 적용) 다. 1년 미만 보유 라. 1세대2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 10.12.31. 양도분 마.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09.1.1.' 10.12.31. 양도분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 10.12.31. 양도분 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 10.12.31. 양도분 아. 비사업용토지 자. 미등기양도 ※ 양도자산이 상기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1-10 1-15 1-20 1-10 1-10 1-25 1-28 1-26 1-30	6~35% 누진세율 40% 50% 6~35% 누진세율 6~35% 누진세율 45% 45% 60% 70%
국내 자산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나. 중소기업법인 주식(상장, 비상장) 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상장, 비상장)	1-70 (1-62, 1-42) (1-61, 1-41)	30% 10% 20%
국내 자산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1-11 1-12 1-27	6~35% 누진세율 6~35% 누진세율 60%
국내 자산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국외 자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6~35% 누진세율
국외 자산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의 주식 나. 가목 외의 주식	2-61 2-64	10% 20%
국외 자산	3.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2-62 2-10	6~35% 누진세율 6~35% 누진세율